

증 인 신 청 서

사 건 2000나0000 손해배상(기)

항 소 인(원고) ㅇㅇㅇ

피항소인(피고) ♦♦♦

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(원고)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인을 신청합니다.

다 음

1. 증인의 표시

성 명 : ■■■

주 소 :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 (우편번호 ㅇㅇㅇ-ㅇㅇㅇ)

주민등록번호 : 00000-00000

전화 · 휴대폰번호 :

직 업 : 농업

2.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은 원고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원고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원고의 아들인 소외 박◉◎와 함께 피고의 집을 방문하였고, 피고의 처와 피고의 모가 원고의 병실을 찾아왔을 때 원고의 병실에 함께 있었음.

3. 입증취지

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함.

4. 증인신문사항(별첨)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항소인(원고)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고등법원 제ㅇ민사부 귀중



증인 ■■■ 신문사항

- 1. 증인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을 아는가요?
- 2. 증인은 이 사건 항소인의 부상이후 소외 박●●와 함께 피항소인의 집을 방문 한 사실이 있지요?
- 3. 그 때 피항소인의 집에는 피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처, 피항소인의 어머니가 있었지요?
- 4. 소외 박●●가 '우리 어머니(항소인)는 현재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다 치게 한 사람이 누구냐?'고 하자, 피항소인은 '살짝 밀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 게 되었다'면서 사과하고, 치료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지요?
- 5. 증인은 항소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피항소인의 처와 피항소인의 어머니 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항소인을 병 문안하러 찾아 온 사실을 알고 있지요?
- 6. 기타 관련 사항.
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 신청기간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
, , , ,	에 미리 증인신청을 하여야 함.
제출부수	신청서 1부
	※ 증인신문이 채택된 때에는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
	방의 수에 3(다만,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)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
	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민사소송규칙 제79조의 규정
	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
	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규칙 제80조
	제1항).
증거조사비 용	법원이 증거조사의 결정을 한 때에는 바로 민사소송규칙 제19조
	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할
	당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게 하여야 하고, 증거조사를 신
	청한 사람은 위 명령이 있기 전에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낼 수 있
	으며, 법원은 당사자가 위 명령에 따른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
	우에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(민사소송규칙 제77조).
기타	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함(민
	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본문)
	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
	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
	관하여 피고인,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의 죄를
	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{형법 제152조(위증, 모해위증)}.
	증인·감정인·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
	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확정된 종국
	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. 다만, 당사자가 상소
	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,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
	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7호).
	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
	적으로 하여야 함(민사소송법 제293조).
	중인신문조서의 기재에 관하여 불복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164조
	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. 따라서 증인신문조서
	에 증인들의 증언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, 증언한 바
	없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잘못이라는 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을
	수는 없음(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86 판결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증거